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을 폐지하고, 기술창업과의 명칭을 신산업기술창업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8. ~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 제11호의2”를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를 “제12조제3항제11호의2 및 제52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판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제9조제17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중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미래산업전략팀”을 “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창업과장”을 “신산업기술창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공간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전략의 수립·시행
4.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간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5. 중소기업 창업 관련 연구·정보·기술·교육·인력 등 분야별 국제 협력
6.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현황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7. 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의 기획·추진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6”을 “489”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2”를 “173”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41”을 “14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86”을 “489”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83”을 “184”로,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2”를 “13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00”을 “401”로 하고, 일반직 계 “400”을 “401”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7”을 “7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00”을 “401”로 하고, 일반직 계 “400”을 “401”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7”을 “78”로 한다.

별표 7 3)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47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부령 제48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중소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창업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창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창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② (생 략)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u>제10호</u> 까지, 제11호의2,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7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u>제10호</u> 까 <u>지</u>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52호부터 제71호까지 및 제78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u>제12조제3항제11호의2 및 제52호</u> 부터 -----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업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⑩・⑪ (생략) ⑫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u>해외 현지 창업정책의 수립</u> <u>·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2. ~ 22. (생략) ⑬ ~ ⑯ (생략) ⑰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u><신설></u> 15. (생략) ⑱ ~ ㉓ (생략)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④ (생략) ⑤ <u>창업벤처혁신실에 창업정책과, 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미래산업전략팀, 특구운영과 및 특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u>	⑩・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판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u> 12. ~ 22. (현행과 같음) ⑬ ~ ⑯ (현행과 같음) ⑰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⑱ ~ ㉓ (현행과 같음)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신산업기술창업과, 창업생태계과, 청년정책과, 글로벌창업팀,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u>----- ----- -----
--	---

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생략)

⑦ 기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⑧·⑨ (생략)

<신설>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산업기술창업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⑩ 글로벌창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설·공간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전략의 수립·시행

4.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간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5. 중소기업 창업 관련 연구·

정보 · 기술 · 교육 · 인력 등
분야별 국제협력

6.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현황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7. 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을 위
한 행사 등의 기획 · 추진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소
관 창업기업등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 업
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
하지 않는 사항

⑪ ~ ⑬ (현행 제10항부터 제12
항까지와 같음)

<삭 제>

⑩ ~ ⑫ (생 략)

⑬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 · 벤
처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시책의 수립 · 시행

2.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 · 벤
처기업에 대한 민 · 관 협력체
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 · 벤
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 · 벤

초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5. 미래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관련 현안대응 및 동향분석

6. 그 밖에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⑭·⑮ (생략)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③ (생략)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중소

⑭·⑮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③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47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부령 제48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중소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산업전략팀은

이 조에서 같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47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부령 제48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중소기업부령 제75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삭 제>

2024년 7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
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창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6</u>	<u>489</u>	+3
·	·	·	
·	·	·	
일반직 계	<u>480</u>	<u>483</u>	+3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72</u>	<u>173</u>	+1
·	·	·	
행정주사 · 세무주사 · 통계 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 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 업연구사	<u>141</u>	<u>143</u>	+2
·	·	·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6</u>	<u>489</u>	+3
•	•	•	
•	•	•	
일반직 계	<u>480</u>	<u>483</u>	+3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 무관·식품위생사무관·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83</u>	<u>184</u>	+1
•	•	•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 주사·사서주사·공업주 사·시설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 업연구사	<u>132</u>	<u>134</u>	+2
•	•	•	
•	•	•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0</u>	<u>401</u>	+1
일반직 계	<u>400</u>	<u>401</u>	+1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77</u>	<u>78</u>	+1
·	·	·	
·	·	·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0</u>	<u>401</u>	+1
일반직 계	<u>400</u>	<u>401</u>	+1
·	·	·	
·	·	·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77</u>	<u>78</u>	+1
·	·	·	
·	·	·	